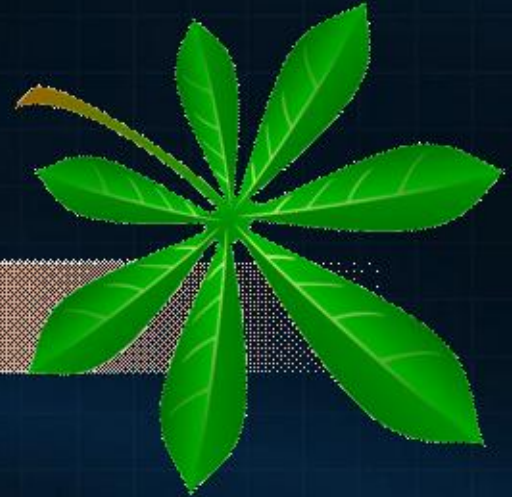


계약서 작성 사례

2007년 5월 23일

인하대학교 고병기

사례 1



소송의 주체는 ?

제3자와 “계약기술”의 특허와 관련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을”의 요청이 있을 시, “갑”은 법적 소송의 주체가 되어 성실하게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한다. 단, 법원의 확정 판결 결과는 “갑”에 책임이 없으며, “을”은 모든 법정 비용을 부담한다. 소송비용의 지불시기는 “갑”의 해석에 따르며, 법정소송과 관련하여 승소시 “을”은 “갑”에 제3자 지불 배상금 중 법정소송비용을 공제하고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중 50%를 성공사례금으로 “갑”에게 지불한다.

사례 2

소송기간의 기술료 지급

제3자의 소송이 있는 경우 소송 제기일로부터의 실시료는 유보하며,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갑” 승소시 소송 진행기간은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계약은 지속되며, “갑” 패소시 소송제기일로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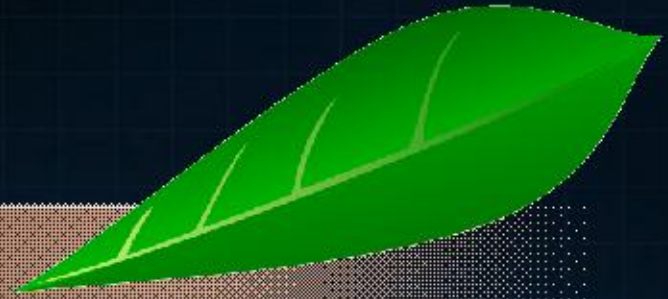
연구제한?

제3자와의 연구개발시 “갑”은 “을”에게 우선 참여를 제의하고, “을”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제3자와 계약기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단, 정부 연구과제 및 비영리 기관 지원 연구과제는 제외로 한다.



사례 3

별도의 로열티 적용



인하대학교 학생이 “을”의 회사에 취업하여, 인하대학교에 석·박사 과정에 입학할 경우 “을”은 해당 학생의 장학금으로 매학기 등록금의 1/2을 인하대학교에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갑”이 정부출연금 등 “을” 이외의 제 3자가 부담한 연구비로써 수행한 “개량기술”을 실시코자 하는 경우 “을”은 별도의 실시계약을 체결하여 투입된 원금연구비 이상을 “갑”에 연구비등으로 상환키로 한다

사례 4



시제품이 있는 경우

“갑”이 “을”에게 시제선 양도 후, 계약제품에 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양도한 계약제품은 연구·학술 목적으로 제작한 시제품으로, 본 계약제품에 대한 기술적 문제에 대해 “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기할 수 없다.

“갑”은 정액실시로 납부즉시 “을”에게 “갑”이 개발한 계약제품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을”이 본 기술을 사용토록 한다. 이때 시제선 양도에 따르는 경비는 전액 “을”이 부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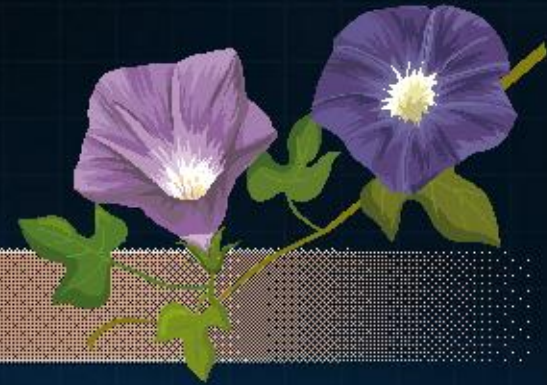
사례 5

한계 설정 필요?



- 1) 갑측의 미래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 탁월한 기술개발 능력을 보유한 당사자로서 유일하게 을측을 인정한다.
- 2) 을측이 보유한 지적재산권과 특허기술 및 연구 개발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 결합하여 최우선적 산학협력 파트너십의 당사자로서 상대방을 위해 소요 연구공간 확보와 소요 연구인력 배치 등 필요한 최선의 협력을 다한다.

사례 6



추가 연구에 대한 권리 확보

“갑”이 학술적 연구 목적으로 제3자와 기술에 대한 관련기술연구를 수행할 경우, 관련에 참여한 제3자의 권리보호 목적으로 실시권 부여를 요청할 경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기술개발결과 애프터 서비스?

본 개발의 하자보완 기간은 첨부 개발계획서의 개발범위 내에서 개발성과물 제출 후 십이(12)개월간으로 하며, “대학교”는 하자 사항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위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